

# 2023년 9~10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으로 불법어업 사전예방, 어업인 자발적 준법의식 제고 및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 1 가을철 불법어업 근절 전국 합동단속

- (기간) '23.10.1. ~10.31.(잠정)
- (지역) 서해안 해상 및 주요 항·포구 등
- (참여) 서해단(주관), 지자체·해경·수협 등(협조)
- (주요 내용)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및 불법어업 빈도 증가 등에 따라 효율적 단속
  - 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 불법조업
  - 무허가·무면허, 어구·어법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법 위반 등
  - 육상 어업관리 및 불법어획물 유통 등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홍보 실시
- ※ 신고 및 문의
  -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588-5119
  - 홈페이지 : [www.mof.go.kr](http://www.mof.go.kr)

## 2 육상 지도·점검

- 추석 명절 불법어업 및 수산물 유통 특별단속
  - (기간) '23.9.18. ~9.27.(잠정)
  - (지역) 서해안 해상 및 주요 항·포구 등
  - (참여) 서해단(주관), 지자체·해경·수협 등(협조)
  - (주요 내용) 무허가 조업, 수산물 불법유통, TAC 대상어선 점검 등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체장·체중) 위반
    - TAC 대상어선(할당량 초과, 위판장소 등) 점검

근거 : ①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②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 □ 어선법 지도·점검

- 어선 건조 또는 건조발주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한 자<sup>①</sup>
-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sup>②</sup>
- 어선검사 후 선체 등을 임의로 증·개축하여 상태 미 유지(임의 개조 등)<sup>③</sup>
-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sup>④</sup>
-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sup>⑤</sup>
- 어선 명칭·선적항 미표시 및 어선번호판 미부착<sup>⑥</sup>

근거 : ①어선법 제8조, ②어선법 제21조, ③어선법 제23조, ④어선법 제5조, ⑤어선법 제31조의2 ⑥어선법 제16조

## □ 낚시어선 안전관리

- (낚시터) 무허가·무등록, 허가·등록기준 미충족 영업 및 이용객 안전 등 조치명령 거부·기피행위<sup>①</sup>
- (낚시어선) 불법영업 및 이용객 안전 준수사항 미이행<sup>②</sup>
- (유통·판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sup>③</sup>

근거 : ①낚시관리및육성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2, 제47조, 제50조, ②낚시관리및육성법 제25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제50조, ③낚시관리및육성법 제7조의2

## □ 내수면 불법어업

- 유해어법(유독물, 전류 등)<sup>①</sup> 및 불법어구\* 이용 포획·채취 등<sup>②</sup>
  - \*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행위<sup>③</sup>

근거 : ①내수면어업법 제19조, ②내수면어업법 제18조, ③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 □ 면세유류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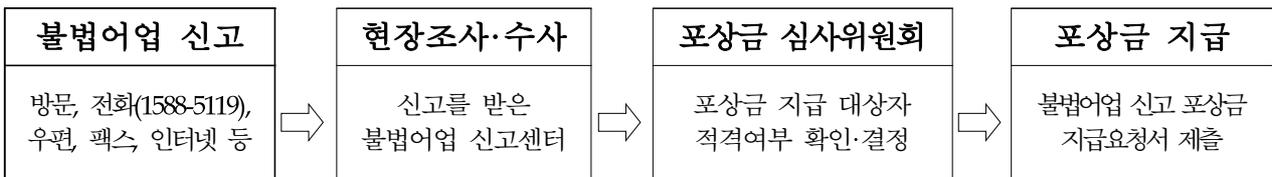
\* 대상 : 관리기관(수협·농협), 공급시설(급유소,주유소 등), 공급대상(어선·시설·기기)

- (점검) 관리기관의 적정 공급 여부, 사용자의 공급대상(어선,시설 등) 존재 여부 등
- (관리기관)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관련 절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공급시설) 착색 유무, 출·재고량 일치여부, 양수 및 감면세 부당 편취 등
- (어업인) 부정 수급·용도의 사용, 변동사항 신고 유무 등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관리기관 관리부실, 부정사용(용도의 사용), 변경신고, 부정환급, 양도·양수 등

## 3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전화 : 1588-5119
-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 포상금 지급절차



## 4 어업분쟁 조정제도 안내

- 어업분쟁\* 당사자 간 협의와 화해·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해결
  - \* 어업·지역 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 등 어업활동에 관한 분쟁
- ⇒ 조정신청 :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전화 및 팩스\*

\* (H.P) 061-240-7974, (FAX) 061-240-7978

## 5 사건처리신호등 제도 등 안내

### ○ 사건처리신호등

- 확인방법 : 서해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건처리신호등'\* 게시판에 사건처리 진행 현황 공지(● : 사건접수 → ● : 관할 검찰청 이송(송치) → ● : 처리완료)

\* 제도취지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검거한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의 현재 사건 처리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는 시스템

### ○ SNS홍보(카카오톡채널)

- 홍보내용 : 불법어업 사전예고 안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등 정보 공유, 수산관계법령 재·개정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 지도단속 보도자료

\* 제도취지 : SNS를 활용한 수산 정책 및 불법어업 사전 예고제 안내



① 카카오톡 접속 상단에 돋보기 클릭



② 서해어업관리단 검색



③ 서해어업관리단 클릭



④ 서해어업관리단 채널이용 가능



#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안심 ① 국내산 수산물 안전합니다(3중 방사능 검사 체계)



식품내 방사성 세슘(<sup>134</sup>Cs+<sup>137</sup>Cs)기준 (단위: Bq/Kg)

EU	미국	CODEX	한국
1,250	1,200	1,000	100

국제 대비  
10배 이상  
엄격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현재까지  
7만5천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적합

## 안심 ②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을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 수산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9~10월 주요 포획 금지 어종 및 금지 체장**

어 종	금지 체장	금지 기간	비 고
<b>&lt;해수면&gt;</b>			
대게	9cm	6.1~11.30.	암컷 포획금지
소라	5cm (제주 7cm)	여수(6.1~30), 울릉(6.1~7.31), 제주 추자면(7.1~8.31)	
연어		10.1~11.30	
툰		10.1~1.31	
<b>&lt;내수면&gt;</b>			
은어	-	9월 15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산천어	20cm 이하		
송어	12cm 이하		
쏘가리	18cm 이하		
황복	20cm 이하		
참게 동남참게	5cm 이하	8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기수재첩	섬진강(각장 1.2cm이하) 섬진강제외(각장1.5cm이하)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좁주름다슬기	각고 1.5cm 이하		
말조개	각장 9cm 이하		
뱀장어	15cm 이상 45cm 이하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 어선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민국호  
삼포



어선의 선주는 선수 양현에 **선명**과, 선미외부에 **선적항·선명**을 표시해야 하며(10cm 크기 이상), 은폐·훼손하거나 미표기 시 **법칙** 규정이 적용됩니다(어선법 제18조)

※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은폐·반경·재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선법 제53조에 따라 미표기 시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선미부(선명, 선적항), 선수 양현(선명) 미기재



어선명칭 정상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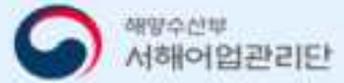
선명은 10cm크기이상의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영문 X)



선명 표시 잘못된 예 (영문 표기 X)



선명 표시 잘못된 예 (한글 표기 O)



# 면세유류 부정유통 범죄행위입니다!



## [ 면세유류 부정유통 바로보기 ]

### 부정유통 사례

주유소에 재판매

조업 중단 선박  
(행정처분 등)에 사용

다른 어업인에게  
면세유 또는 유류카드 양도

가정용 보일러,  
자가차량 주유 등  
용도 외 사용(어업기기 외)

###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어.업.인.이.라.면.반.드.시.알.아.두.세.요!

## 면세유 신청 시 주의사항

### ① 수임자 미 지정 → 면세유 공급 불가

■ 수임자 지정 → 유류카드 발급 조합에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수임자 공급 가능

※ (공통) 위임자의 유류카드·위임장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선장) 선박입출항신고서  
(기관장, 사무장) 고용계약서



### ② 어업인 사망 → 면세유 공급 불가

### ③ 어선 폐선 → 면세유 공급 불가

### ④ 소유권 변동(취득·양도)

→ 기존 소유자 면세유 공급 불가

→ 신규 소유자만 면세유 공급 가능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류카드 발급 조합에 변경신고 필수!

### 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중간검사포함)

→ 면세유 공급 불가

※ 선박안전검사 통과 후 공급 가능

### \*\*\* 면세유류 공급 & 사용 CHECK LIST \*\*\*

- 본인 소유의 선박, 어업기계, 시설, 어업허가를 갖고있는가?
- 본인 소유 선박에 시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매월 출어사실 및 수산물거래내역을 증명하여 신청·공급하고 있는가?
- 변동 사유 발생(엔진 마력, 소유자 등) 시 신고(임제신고 포함)하고 있는가?